

◎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6-4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이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설치장소 이전 운영에 관한 고시

1. 추진내용

가. 이전 내역

대상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우체국 설치 장소		이 전 예정일	신청사 업무개시일
		현행(~에서)	변경(~으로)		
무주무풍 (무주)	6급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현내로 23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현내로 165-10	'26. 7. 3. (금)	'26. 7. 6. (월)

*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이전일 당일('26. 7. 3.) 업무 중지

나. 이전 사유 : 지방정부(무주군) 공간 공동이용에 따른 우체국 이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이전 및 업무시작 익일(2026.7.7.)까지 유효